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4가합586301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피고1. A

2. B

3. C

변론 종결2016. 8. 28. (피고 1, 2에 대하여)

2016. 9. 22. (피고 3에 대하여)

판결 선고2016. 11. 10.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052,278,055원 및 그 중 1,045,803,171원에 대하여 2014. 9. 29.부터 2015. 4. 11.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주식회사 D(서울 강남구 E, 대표이사 일본국인 F)과 피고 C 사이에 2014. 9. 18. 별지 목록 제2의 가.항 및 다.항 기재 각 광업권에 관하여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주식회사 D에게 별지 목록 제2의 가.항 및 다.항 기재 각 광업권에 관하여 2014. 9. 18. 접수 제100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A은 원고에게 1,052,278,055원 및 그 중 1,045,803,171원에 대하여 2014. 9.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주식회사 D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광업권에 관하여 2013. 2. 1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 B은 주식회사 D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 3. 15. 접수 제7682호로 마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광업권에 관하여 2013. 2. 18. 접수 제204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피고 C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과 아래 2.의 가.항 및 나.항 기재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2013. 1. 15. 및 2013. 4. 4. 각 이 사건 회사 사업장에 가압류가 마쳐짐에 따라 신용보증약정 제6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전구상권이 성립하게 되었다. 위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2014. 9. 18. 주문 기재 각 광업권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와 위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위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2. 피고 A에 대하여

가. 2010. 6. 18.자 신용보증약정에 관하여

피고 A이 "보증서번호 : G, 보증일 : 2010. 6. 18., 보증원금 : 170,000,000원. 보증기한 : 2015. 6. 17." 인 원고와 이 사건 회사의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연대보증약정을 한 사실, 이 사건 회사 사업장인 안동시 H 토지에 관하여 2013. 1. 15. 채권자 I의 가압류등기 및 2014. 4. 4. 채권자 J의 가압류등기가 각 마쳐졌고, 원고는 2014. 8. 20.자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신용보증부실처리를 한 사실, 원고가 2014. 9. 29. 신한은행에 이 사건 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A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보증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2009. 11. 2.자 신용보증약정에 관하여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A이 "보증서번호 : K, 보증일 : 2009. 11. 2., 보증원금 : 1,000,000,000원, 보증기한 : 2010. 11. 1.(2014.10.31.로 연장)" 인 신용보증(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 한다)에 관하여 최초 연대보증약정을 한 이후 그 약정을 계속 연장하였으므로 위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과 관련한 구상금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는, 2012. 10. 31. 연대보증약정 연장에 동의하여 2013. 10. 31.까지는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였으나, 그 이후 연대보증약정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주장의 연대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다툼다.

2) 판단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과 관련하여 연대보증약정 연장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가 연대보증약정을 연장한 기간 내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위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신용보증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원고는 2009. 10. 31.경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회사가 신한은행 코엑스금융센터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으며, 피고

A은 위 일시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하는 신용보증원금 및 추가로 부담하는 이자액과 비용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을 바탕으로 신한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았고, 이 사건 신용보증은 1년 단위로 계속 보증기한이 연장되다가 2013. 10. 31.경 보증기한이 2014. 10. 31.까지로 연장되었다.

다) 연대보증인인 피고 A은 2012. 10. 31. 이 사건 신용보증과 관련하여 '사전동의서'에 자필 서명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사전동의서에는 이 사건 신용보증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본인은 상기 피보증인의 주채무기한이 연장되거나 또는 주채무기한이 신용보증서상의 신용보증기한을 초과하여 실행됨에 따라 주채무기한과 보증기한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신용보증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된 신용보증 기한까지 귀 기금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지겠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 A의 연대채무액 계산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가.항 기재 신용보증 및 이 사건 신용보증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를 대위하여 2014. 9. 29. 신한은행에 보증원금 합계 1,042,499,998원 및 이자 합계 7,545,333원 등 1,050,045,331원을 변제한 사실, 2014. 10. 8.부터 2014. 11. 19.까지 채권보전비용 등으로 합계 6,473,490원을 지출한 사실, 대위변제금 중 4,242,160원을 회수한 사실, 2012. 12. 1. 이후 원고의 손해금률은 연 12%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A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1,052,278,055원{대위변제금 잔액 1,045,803,171원(1,050,045,331원-4,242,160원)+확정손해금 1,394원(원 미만은 버림, 4,242,160원×1/365×12%)+대지급금 6,473,49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1,045,803,171원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제일인 2014. 9.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5. 4. 11.까지는 약정한 손해금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변경 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하여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위 피고의 근저당권은 2013. 3. 7.경 및 2013. 2. 15.경 각 그 등기원인이 성립하였는데, 원고는 위 근저당권설정 이후 1년이 넘은 2014. 11. 25.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바, 원고로서는 위 근저당권설정 무렵 근저당권설정 사실을 알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시점으로부터 1년 전인 2013. 11. 25. 이전에 위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채무자인 이 사건 회사는 2011년경부터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던 중 2013. 1. 15.경 이 사건 회사 사업장에 가압류등기가 경로되었으므로, 원고의 신용보증약정 제6조 제1항 제7호 및 제6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사업장에 가압류가 된 때 또는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객관적으로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 해당하게 되어 그 무렵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전구상권이 성립하였다. 피고 B은 원고의 사전구상권이 성립한 직후인 2013. 2. 15.경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광업권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2013. 3. 7.경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

2) 피고 B 주장의 요지 위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 상태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고, 기존에 발생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뿐이다.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회사는 무자력 상태가 아니었고, 원고는 사전구상권이 성립하고 수개월이 지난 2013. 10. 31.에도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신용보증기한을 연장해주었으며, 가압류 이후 원고의 부실처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있었다. 따라서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다. 피보전채권의 존재

2013. 1. 15.경 채무자인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 위 가압류등기가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사유가 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일시경 성립한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전구상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라.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1) 2013. 2.경 및 2013. 3.경 채무자인 이 사건 회사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채무초과상태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갑 제10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재무 상태에 관한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소극재산]

● 차입금 채무 합계 7,176,223,330원 : 이 사건 회사에서 작성된 2013.10.30.자 차입금 현황(갑 제17, 24호증)에는 2013. 2.경 이전에 발생한 차입금만 기재되어 있는데, 은행차입금은 2,983,333,330원, 한국광물자원공사 차입금은 1,162,890,000원(2016. 2. 25.자 금융거래정보회신에 의한 2013. 2.경 이 사건 회사의 대출금은 1,154,238,600원이다), L 등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3,030,000,000원으로, 총 합계 7,176,223,330원이다[2012. 12. 31.자 재무상태표에는 단기차입금이 3,032,379,516원으로, 장기차입금이 1,162,890,0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위 단기차입금은 신한은행 관련 채무액수(3,032,379,516원)와, 장기차입금은 한국광물자원공사 차입금과 각 대동소이한바, 이 사건 회사의 재무제표상 차입금 항목에는 은행과 기관에 관련된 차입금만 기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회사의 개인에 대한 채무가 재무제표상 다른 항목으로 기재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다].

● I 가압류 채무 222,683,786원(갑 제7호증)

● 경상남도 손해배상채무 310,605,000원(갑 제14호증)

• M 100,000,000원(갑 제7호증, 2013.3. 15. 근저당권설정)

[적극재산]

● 자산총계 5,862,616,139원(갑 제14호증에 따름. 갑 제15호증과는 일부 금액 차이가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회사가 회생개시신청서(갑 제14호증)에 기재한 사정을 더하여 보면, 2013. 2.경 및 2013. 3.경 이 사건 회사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크게 초과하였다고 보인다. 그러나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회사가 회생개시신청을 하면서 '한국광물자원공사가 2010. 3.경 작성한 광산평가조서에 따라 2014년도

광업권의 가치를 재평가한 후 광업권에 대하여 약 2,109,280,516원의 가치를 추가하여야 한다'고 기재한 점, ② 한국광물자원공사가 2009. 12. 평가한 이 사건 회사의 광산평가액(생산량, 판매단가, 매장량, 연수익, 투자비를 고려한 평가액)은 투자비용 2,486,229,000원을 전제로 하여 5,530,000,000원이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의 적극재산을 평가하면서 위와 같은 광업권의 가치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사회통념상 위 회생개시절차 신청서 작성일인 2014. 11. 14.보다 앞선 피고 A의 각 근저당권설정일 당시에는 매장량 등에 비추어 광업권의 가치가 더 높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위에서 본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액수만으로 이 사건 회사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또한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사전구상권이 발생한 2013. 1. 15.경부터 약 9개월이 경과한 2013. 10. 31.경에도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신용보증을 연장해줄 정도로 이 사건 회사의 객관적 신용도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회사는 그 신용보증 연장 이후로도 보증받은 은행채무에 대하여 이자 및 원리금 연체 없이 사업을 계속하였고, 원고가 대위변제한 2014. 9. 29.경 2010. 6. 18.자 신용보증과 관련하여 남은 채무는 42,499,998원에 불과하였던 점, ③ 원고는 2014. 8. 20.경에서야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부실처리를 하였는데, 그 사유는 2014. 8. 20.경 발생한 새로운 사유가 아니라 2013. 1. 13.자 가압류 및 2014. 4. 4.자 가압류였던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채무자인 이 사건 회사가 위 각 근저당권설정행위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더욱 부족하게 됨으로써 원고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채무자인 이 사건 회사가 무자력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사해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와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함종식

판사박지영

판사김신영

별지